간호법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9

발의연월일: 2021. 3. 25.

발 의 자:김민석·김상희·허종식

고영인 · 정성호 · 서영석

기동민 · 김원이 · 강준현

최종윤 · 최연숙 · 최혜영

김성주 · 정춘숙 · 민병덕

김윤덕 • 조오섭 • 천준호

양경숙 · 송석준 · 인재근

윤준병・우상호・송영길

이용호 · 남인순 · 송갑석

강병원 · 오영훈 · 송재호

오영화 · 김예지 · 위성곤

소병훈 · 안호영 · 이원택

이상민 · 문진석 · 이형석

유영덕ㆍ허 영ㆍ강득구

강선우 · 조정식 · 이수진비

우원식 · 이상헌 · 박상혁

고민정 의원(49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 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함(안 제5조).
-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함(안 제13조).

-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 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 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 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

- 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 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간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전문간호사"라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요양보호사"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학교보건법」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건교사(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의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및 응

급처치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

제2장 면허와 자격

-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 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이 법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9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 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

-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 정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

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7조(요양보호사 자격인정)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이하 "간호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 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

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9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 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 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5. 요양보호사가 이 법 제15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 제14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5조(요양보호사의 업무)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16조(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2 조에 따른 업무(이하 "간호업무"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간호업무

를 할 수 있다.

- 1.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간호업무를 하는 사람
- 3.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②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7조(업무거부 금지 등) ① 간호사는 간호업무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각종 업무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간호기록부 및 면책사유 등) ①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제19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간호기록부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간호기록부의 열람 및 송부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 ⑤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 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 제19조(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등) ①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 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 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 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정보누설금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호업무, 제18조제2항에 따른 간호기록부의 보존 업무,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간호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송부 업무 및 제19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제21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 ②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간호사 단체

- 제24조(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 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 ⑦ 중앙회는 제4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26조(협조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

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 제28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 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이하"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

-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 제31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은 제35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 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 · 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 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5.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제24조에 따른 중앙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간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 2.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 3. 간호인력의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 6. 간호인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 7.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감독

제37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

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간호사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38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간호사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간호기록부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경우

- 4. 제40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업무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5.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 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4호에 따라라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제40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 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업무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1.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한 때
 -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

- 4. 제21조를 위반한 때
- 5.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6. 「의료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7.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 호업무를 한 때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및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8호를 위반한 간호사등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2호·제5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43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중앙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허 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업무를 한 사람
 -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
 -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거나 면허 또는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 4.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사람
 - 2. 제2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다만,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③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업무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 5.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 호업무를 한 사람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

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를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을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진료나 조산"을 "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 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으로,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의료·조산업무"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료인은"을 각각 "의사·치과의사·한의 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의무기록"을 "전자의무기록 (「간호법」 제19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인이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각각 설립"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2제1항 본문 중 "진료기록부등의"를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라 기록 · 보존하고 있는 간호기록부의"로, "진료기록부등을"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진료기록부등을"을 각각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로 한다.

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진료기록부등을"을 각각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료기록부등을"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진료기록부등을"을 "진료기록부등일"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등"을 각각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등"을 각각

제59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가"로 한다.

제78조ㆍ제80조ㆍ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다.

제92조제3항제3호 "진료기록부등을"을 "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로 한다.